

상대를 움직이는 논증의 기술 (I)

I. 논증의 필요성

II. 일반화 논증

1. 다수의 대표성 있는 예를 제시
2. 정확한 통계의 적절한 사용
3. 반대 사례에 대한 검토

III. 인과관계 논증

1.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
2. 필요조건, 충분조건, 기여조건의 구별
3. 간접원인과 직접원인의 구별

IV. 맺음말

상대를 움직이는 논증의 기술 (I)

I. 논증의 필요성

논증이란 “어떤 사람이 논리적인 담론을 통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것을 믿거나 행하도록 하는 활동이나 기술”¹⁾이다. 논증은 증거, 논리, 체계적 사고를 동력으로 삼는 설득으로서 감정이나 화자에 대한 신뢰에 호소하는 설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논증은 주장과 반박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주요 기제이므로, 의견 대립의 당사자는 논증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상호 견해의 비교 우위를 검토하고 이해하며 이로써 자발적인 합의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도 논증 과정은 필요하다. 양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인 조정에서 감정의 융화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전달하고 상대측 의견의 타당성을 이성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간의 의견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정에서 사용 가능한 여러 논증 형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두 회에 걸쳐 다룰 예정으로, 이번 호에서는 개별적인 여러 사실로부터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일반화 논증’ 및 규칙적인 연관성을 띠는 사실관계에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인과관계 논증’에 대해 이들 논증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²⁾를 함께 소개하면서 조정을 합리적으로 이끄는 논증 기술 방법을 알아보겠다.

1) Mcburney, J. H., J. M. O’Neill and G. E. Mills, 1951, “Argumentation and debate : Technique of a free society,” *Macmillan*, p. 1{Borchers, T., 2007, 『수사학이론』, 이희복·차유철·안주아·신명희 역(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35쪽에서 재인용}.

2) 이 글에서 소개하는 조정 사례 및 회의 사례는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상의 사례이다.

II. 일반화 논증

일반화 논증이란 개별적인 여러 사실을 가지고 집합 전체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논증이다. 통계 자료나 직·간접 경험 사례 등을 제시, 이를 근거로 일반화 논증을 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³⁾ 가령 조정위원회는 관련 통계라든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조정실무 경향을 근거로 일반적인 원칙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조정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일반화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표성 있는 예시가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여부, 통계 산출에 모호하거나 거짓된 부분은 없었는지, 또는 통계의 이용이 부적절하지는 않은지 여부, 일반화 논증 결론과 대비되는 사례 때문에 결론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 등이다.

1. 다수의 대표성 있는 예를 제시

일반화 논증에서 한두 개의 예만으로는 결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고 충분한 수의 예시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일반화 결론이 적용되는 대상의 규모에 따라 예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작은 규모의 집합보다 큰 규모의 집합에서 더 많은 예가 요구된다.

한편 예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에 대하여, 작은 규모의 집합에 대해 일반화를 할 때는 속해 있는 사례 대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고, 큰 규모의 집합에 대해 일반화를 할 때는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일반화를 하려는 대상이 압구정동에 있는 약국이면 아마도 한 점포씩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지만, 전국에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일반화를 하려면 지역, 점포의 규모 등이 고르게 분포된 표본을 추출하여 일정 지역이나 규모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일반화 논증에 대해 잘 알면 조정에 도움이 된다. 다음은 설문조사 시행업체와 이 업체의 설문조사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사 간의 조정 사례 예시로, 일반화 논증의 타당성 검토가 합리적인 조정 논의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3) 서영진, 2012, “TV 토론 담화 분석을 통한 논증 도식 유형화,” 『국어교육학연구』 제43집, 295쪽.

논증활용예시

젊은 남성을 주요 구매층으로 하는 미국의 A 화장품 회사가 한국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 설문조사업체 B사에게 C 경쟁사 제품과 자사 제품의 구매 의사를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A사는 자사 제품의 구매 의사가 높게 나온 설문조사 내용을 신뢰하고 한국에 진출했으나, 실제로 A사 제품 구매율은 C사 제품 구매율보다 훨씬 저조하여 A사는 많은 손해를 입고 한국에서 철수했다. A사는 한국시장 진출에 따른 피해의 일부 배상책임이 설문조사를 잘못 시행한 B사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A사와 B사 간 상사조정이 열리게 되었다. A사는 설문조사에 큰 오차가 발생한 책임을 B사에게 묻고 싶어 하지만, B사는 50,000여 가구의 집전화로 통해 이루어진 설문조사는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므로, 양 측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러한 경우 조정위원은 어느 부분을 살펴야 할까.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대가 편향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설문조사가 핸드폰이 아닌 집전화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설문조사에는 가정주부에 해당하는 여성이 응답했을 확률이 높다. 반면 학생이나 직장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 짐작되는 젊은 남성들(A사의 주요 구매층)은 주간에 집전화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응할 확률이 떨어지리라 예상된다. B사가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화하고자 했던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했는지 조정위원은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정확한 통계의 적절한 사용

일반화 논증을 할 때 논거로 자주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이다. 통계의 활발한 이용은 사람들이 통계에 가지는 강한 신뢰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통계가 늘 정확한 사실을 담보하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선입견이다. 통계 수치 자체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통계는 정확하더라도 그 이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계 자체’와 ‘통계의 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통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통계 자체에 대한 검토

먼저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대략의 유형들을 살펴보겠다.

① 우선 통계 항목이 현실을 반영하기 미흡하여 최종적인 통계 수치가 실제 현실과 다르게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⁴⁾ 좋은 예가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인데, 실업률을 계산할 때 장기간의 구직활동 끝에 구직을 포기한 자, 불완전취업자(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은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업률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업률 수치는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 통계자료가 조작이 쉬운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때도 통계의 신뢰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가령 2006년 여성건강기구(WHI)는 4만 8,835명의 여성을 조사하여 기름진 식사와 대장암, 심장 발작 발병률에 있어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억(때때로 1년 전까지)에 의존하여 자료를 추출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통계라는 비판이 있다.

③ 불법체류자, 불법마약 거래, 뇌물 등 음성적인 불법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정확히 집계하는 것 자체가 우선 불가능하므로 이 수치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④ 마지막으로 적절한 표본을 설정하는 것도 정확한 통계치를 얻기 위해 중요하다. 표본을 통해서 전체를 유추하게 되는데, 표본을 너무 넓거나 좁게 잡으면 자칫 그릇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표본 설정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통계 수치가 도출되는 예는 미국 풋볼 선수이던 O. J. 심슨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 검사는 심슨이 평소 아내를 폭행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것을 유죄의 정황 증거로 제시했는데, 변호인 측은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아내 중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경우는 1,000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이에 대해 템플대학교 수학 교수인 파울로스는 변호인이 표본을 잘못 설정한 통계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파울로스에 따르면 남편에게 폭행당하던 아내를 표본으로 해서 아내가 남편에

4) 통계 자체에 대한 검토를 다룬 다음의 세 단락은 Cavender, N and H, Kahane, 2013, 『논리와 현 대화술』, 김태은 역(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156-160쪽을 참조했다.

5) O. J. 심슨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최훈, 2010, 『변호사 논증법』(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97-298쪽을 참조했다.

게 살해당할 확률을 계산하면 0.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남편에게 폭행당하던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한 경우’에 그녀를 평소 폭행하던 남편이 범인일 확률은 80퍼센트로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심슨의 아내는 난자된 채 발견되어 살해된 게 확실했다. 이러한 경우에 남편이 범인일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아내라는 광범위한 표본을 설정해서는 실제의 확률과는 다른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아내가 살해당한 사실이 추가됐으므로 그녀의 남편이 살인자일 확률은 더 이상 0.1퍼센트일 수 없다). 이때는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던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한 경우를 표본으로 삼아 그 중에서 남편이 범인일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게 수학자 파울로스의 설명이다.

(2) 통계의 이용에 대한 검토

정확한 통계일지라도 통계의 사용에 문제가 있어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부적합한 경우도 있다.⁶⁾

① 양자 간의 수치를 비교하는 경우에 상이한 대상끼리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가령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미국 주(州)의 살인율이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의 살인율보다 낮게 나온 통계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원래부터 상이한 주들 간의 수치를 비교한 것이므로 의미가 없는 통계의 비교이다. 사형제도를 택하지 않은 주의 살인율은 처음부터 낮았을 수도 있다. 사형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려면 그 근거로서 일정한 주에 사형제도를 도입 또는 폐지한 전후를 비교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통계의 올바른 이용과 관련한 이 같은 유의점은 양자 간의 통계 수치를 비교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다.

② 주장에 부합하는 통계 자료만 제시하고 다른 내용의 통계들을 모두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떤 통계를 근거로 사용할지는 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통계의 취사선택은 상대방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잘못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옳바르지 않다.

6) 통계의 이용에 대한 검토를 다룬 다음의 세 단락은 Cavender, N and H. Kahane(2013), 160-162쪽을 참조했다.

통계의 의도적인 악용은 미국 민간보험사 HMO가 자사를 제재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던 미 의회에 위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통계를 제시했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HMO는 과도한 이윤 추구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등한시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HMO가 제출한 통계 수치에는 이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HMO는 자신의 주요 거래기관인 미국보건계획협회가 통상의 미국인이 각자가 가입한 건강보험사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감 수치를 조사한 것을 통계 자료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통계는 HMO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에는 부적절했다. 첫 번째 이유는 건강한 보통의 미국인은 보험 혜택 등의 문제로 보험 회사와 마찰을 겪을 일이 없고 따라서 건강보험에 만족하는 이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통계 조사기관인 미국보건계획협회의 객관적인 지위가 불투명했기 때문이었다. 이 상황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통계 자료는 최근 건강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HMO 가입자와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만족도를 HMO와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제3기관에서 비교 조사한 통계였다. 실제로 당시 CNN이나 타임지, 하버드대학교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에서는 HMO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만족도가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제시하는 경우에 과연 이 통계가 해당 문제를 검토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만든 통계 자료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퍼센트 제시로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⁷⁾ 예컨대 “김 시장 재임 기간에 고위공무원 부패범죄율이 50%나 줄었습니다” 혹은 “전 시장의 재임 중 부패 사례는 현 시장 아래에서보다 200%나 높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말은 가령 1,000명의 고위공무원 중 현 시장 하에서의 부패 공직자가 전 시장 대비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맞는 말이다. 이 같은 형식의 백분을 말하기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상황을 착시하도록 만들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7) 이 단락의 내용은 Gula, R. J. 2009, 『논리로 속이는 법 속지 않는 법』, 이경석·김슬옹 역(서울: 모멘토), 102쪽을 참조했다.

(3) 통계 논증의 활용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증으로 일컬어지는 통계 논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심할 점이 많다. 통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해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할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보다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를 근거로 한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검토와 반박을 할 수 있다. 조정 실무에서도 당사자 간, 당사자와 조정위원 간에 서로 주장을 교환하면서 통계가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통계에 대한 지식은 도움이 된다. 통계 논거가 제시된 조정 상황에서 논의의 합리적인 진행을 위해 조정위원이 검토할 만한 사항들을 되짚어 보면서, 실무에서 통계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아래는 학생과 대학 간 퇴학 처분을 둘러싼 조정의 예시로 통계 논증에 대한 타당한 비판의 예를 보여준다.⁸⁾

논증활용예시

농구 명문으로 유명한 A 대학에서는 소속 선수가 더 이상 팀에 필요하지 않으면 종종 퇴학처분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 A대 학생인 B 운동선수가 퇴학처분을 받게 되었다. A대의 퇴학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조정이 열렸고, A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 있다.

“4년 전 운동선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퇴학시킨다는 사유로 소송을 당한 이후에 운동선수가 졸업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운동선수 가운데 70퍼센트 이상을 졸업시키고 있어요.”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위원은 위와 같은 해당 통계와 관련해 몇 가지 짚어 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예전의 운동선수 졸업비율은 어떠했는가’이다. 즉 운동선수의 졸업비율이 그 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둘째, ‘운동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졸업비율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일반 학생들의 졸업비율과 비교했을 때 운동선수의 졸업비율이 여전히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 아닌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70퍼센트라는 수치가 예년과 비교했을 때 아주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거나, 운동선수를 제한 학생들의 졸업비율이 70퍼센트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다면, A대가 제시한 70퍼센트라는 수치는 일견 대단해 보이더라도, A대 주장의 논증 근거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8) 아래 예시는 Weston, A., 2010, 『논증의 기술』, 이보경 역(서울: 필맥), 53-54쪽을 참조·각색했다.

아래는 계약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적합한지를 다루는 노사분쟁조정 사례의 예시이다.⁹⁾

논증활용예시

계약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적합한지에 대해 A사 노사 간의 조정이 열렸다. 이에 사측은 계약직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최저 생계비인 1,329,118원을 상회한다며 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주장에 대해 조정위원은 어떤 점을 확인해 보아야 할까.

평균 급여의 대표성이 사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계약직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최저 생계비를 상회하더라도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측이 근거로 제시하는 **산술평균**(모든 연봉을 더한 뒤 인원수로 나누는 값)은 통계 자료의 경향을 나타내는 수의 값인 대푯값의 한 종류일 뿐이고, 대푯값에는 산술평균 외에도 ‘제시된 일련의 수치 중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수’를 의미하는 **최빈값**, ‘크거나 작은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수’를 의미하는 **중앙값**도 있다. 가령 계약직 근로자 중 일부 소수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산술평균은 높게 산출이 되지만, 최빈값이나 중앙값 수치는 훨씬 낮을 수 있다. 이는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노사분쟁조정에서 조정위원은 A사 계약직 근로자의 산술평균 외에 최빈값과 중앙값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반대 사례에 대한 검토

일반화 논증의 결론과 대비되는 반대 사례의 검토는 논증을 탄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¹⁰⁾ 이러한 검토는 일반화 논증을 보다 예리하게 하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해당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이점을 가진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감자튀김과 치킨은 건강에 좋지 않고, 밀크셰이크와 콜라도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일반화 논증을 하고자

9) 아래 예시는 Gula, R. J.(2009), 100-102쪽을 참조·각색했다.

10) 반대 사례에 대한 검토의 내용은 Weston, A.(2010), 58-60쪽을 참조했다.

한다면, 패스트푸드 중 하나인 통밀빵 샌드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대 사례 검토를 통해서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성급한 결론 대신에 “건강에 좋지 않은 패스트푸드가 많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패스트푸드의 어떤 측면이 건강에 유해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전체 패스트푸드의 특징인 빠른 조리법 때문이 아니라 다수 패스트푸드의 특징인 고지방, 고당분이라는 점 때문에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일반화 논증에서 반대 사례의 검토는 스스로 주장을 펼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대로 상대방의 논증을 평가할 때에도 유용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겠다.

Ⅲ. 인과관계 논증

어떤 현상을 두고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밝히는 것이 인과관계 논증으로, 토론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논증이다. 인과관계를 논증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기여조건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간접원인과 직접원인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1.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

인과관계 논증은 규칙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사실관계, 즉 상관관계로부터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때때로 원인과 결과를 찾는 노력을 간과한 채 상관관계가 곧바로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그릇된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로부터 인과관계를 도출할 때 유념해야 하는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해두면 좋다. 그 기준은, 첫째 ‘규칙적으로 보이는 두 현상이 실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둘째 ‘두 현상 간 연관성이 인정되더라도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은 아닌가’, 셋째 ‘문제되는 양 현상 모두를 초래하는 공통의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이다. 인과관계 논증을 검토할 때 위 세 가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 타당한 결론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1) 우연의 일치인지 여부

두 현상 사이에 규칙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관찰되지만 사실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해서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경우가 있다.¹¹⁾ 예컨대 유아의 홍역 예방접종이 자폐증 발병 증가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 논증을 통해서 위 예방접종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고 하자. 이 인과관계 논증은 홍역 예방접종이 있는 뒤 자폐아의 발병이 증가한 상관관계로부터 도출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논증은 단순히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착각한 오류가 있었다. 유아가 홍역 예방접종을 맞는 시기(15개월에서 17개월 사이)가 부모들이 자녀의 자폐증 증상을 알아채는 시기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인과관계를 논증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단순히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두 현상을 두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원인과 결과에 혼동이 있는지 여부

상관관계 자체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알려주지 못하므로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경찰이 많은 지역이 범죄율도 높다는 통계를 두고 경찰이 많아지면 범죄율도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색하다. 이보다는 높은 범죄율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많은 인원의 경찰 배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아야 한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 없이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거나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가정했을 때 어느 쪽의 개연성이 더 높은지를 살피는 방법이 있다.

아래는 필수교과목 선정과 관련하여 인과관계 논증이 활용된 교내 회의의 한 장면이다.¹²⁾

11) 이 단락의 내용은 Cavender, N and H. Kahane(2013), 147-148쪽을 참조했다.

12) 아래 예시는 Gula, R. J.(2009), 173쪽을 참조·각색했다.

논증활용예시

A 대학에서는 필수교과목 선정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이때 미술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모든 학생이 미술 과목을 이수토록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실시한 적성 검사 결과를 보면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의 창의력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미술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하면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은 위 인과관계 논증에서 과연 원인과 결과가 잘 설정되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미술과 수업이 학생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창의적인 학생들이 미술 전공을 택했는지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논증의 개연성이 더 높은가를 따져 주장의 타당성을 견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선후 검토를 위해 입학했을 당시부터 미술전공 학생들의 창의력이 높았는가를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미술과 수업을 들은 타 전공 학생의 창의력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

(3) 다른 공통의 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령 A와 B가 함께 발생하는 경향을 보일 때 A와 B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C라는 독립된 다른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A, B라는 공통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실의 맨 앞자리에 앉으면 더 나은 성적을 얻는다’라는 논증을 검토한다면, 앞자리에 앉은 사실 때문에 더 나은 성적을 얻는 것 이라기보다는, ‘공부에 대해 열의를 가진 학생’이 교실의 맨 앞자리에 앉기도 하고 더 나은 성적을 얻기도 한다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¹³⁾ 인과관계 검토 시 기저에 있는 다른 사실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아래는 폭력 게임에 대한 잦은 노출이 폭행 행위로 이어진다는 보도에 대하여 가능한 반박의 예시이다.

13) Weston, A.(2010), 98-99쪽.

논증활용예시

A 방송사는 폭력성 있는 B사 게임에 대한 노출이 자녀의 폭행 행위를 초래한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B사는 편향된 A사 보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A사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조정위원은 방송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보도 내용이 B사에 지나치게 악의적이었고 B사도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A사가 일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건을 파악했다.

A사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조정위원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보도가 단순히 B사 게임이 청소년의 폭행 행위를 초래하는 단면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인과관계 논증에는 취약했다는 점이다. 먼저 ‘개인이 본래 지니고 있던 폭력성’이라는 공통의 독립된 원인이 B사 게임에 대한 노출과 폭행 행위의 초래라는 결과를 야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취재 당시 고려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자녀가 B사 게임이 아니라 C, D, E사 게임에 더 자주 노출된 상황이 있는지, 즉 자녀의 폭행 행위를 더 직접적으로 초래한 다른 원인의 존재 여부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할 것이다. 인과관계 논증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검토는 피해 보상과 관련된 다른 조정에서 감경 요소를 다룰 때도 생각해볼 만하다.

2. 필요조건, 충분조건, 기여조건의 구별

필요조건, 충분조건, 기여조건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¹⁴⁾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일어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을 필요조건이라고 하고, 원인이 존재할 때 그 결과가 필히 일어나면 그 원인을 충분조건이라고 하며, 원인이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라면 그 원인은 기여조건이라고 한다.

필요조건은 결과 발생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갖추었다고 해서 결과 발생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피아노를 잘 연주하려면 피아노 건반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피아노 건반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피아노를 잘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충분조건은 결과가 발생하기에 충분해서 이것만 갖추면 결과는 반드시 발생하지만, 이것이 없어도 다른 원인에 의해 결과는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달귀

14) 필요조건, 충분조건, 기여조건의 구별에 관한 내용 설명 및 회의사례 예시는 Gula, R. J. (2009), 169-171쪽을 참조·각색했다.

진 췌조각을 잡으면 화상을 입는 것은 확실하지만, 화상을 입는 원인은 이 뿐만이 아니라 끓는 물, 뜨거운 난로 등 다양하다. 기여조건은 이것을 갖추면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으므로 흡연은 폐암에 대한 기여조건이다. 그렇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폐암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흡연을 하면 무조건 폐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므로 필요조건, 충분조건과 차이가 있다.

아래는 국가 정책 회의에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혼동하여 잘못 반박한 예시이다.

논증활용예시

국가 정책 회의에서 빈민층 해결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때 A는 “빈민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단순히 “A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일자리 마련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반박한다.

이 회의의 문제점은 A가 일자리 마련을 빈민층 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일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처지개선을 할 수 없다”)으로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이러한 A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일자리 마련은 충분조건(“일자리가 마련되면 처지는 개선될 것이다”)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다.

유사한 예로, 피아노 레슨 장면을 떠올려보자. 선생님 C는 학생 D에게 피아노를 잘 연주하기 위해 건반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D는 건반을 안다고 피아노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건반을 배우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필요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반박, 거부하는 것으로, 위의 회의와 동일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결국 D는 피아노 연주를 잘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회의에서 B가 한 반대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익이 없다. 이러한 반대 대신에, 차라리 일자리 마련은 빈민층 처지 개선과는 관련이 없다거나(필요조건의 직접적인 반박), 아니면 빈민층 생활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다른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제안하는 것이 건설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적합한 반대일 것이다.

3. 간접원인과 직접원인의 구별

연관성이 먼 원인인 간접적 원인을 연관성이 가까운 직접적 원인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¹⁵⁾ 이는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오류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A가 내 돈을 훔치지 않았다면 나는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술도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고도 나지 않았을 거야”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사고의 직접 원인인 음주운전 사실을 간과하고 연관성이 먼 원인인 A의 절도에 잘못을 미루는 것이다.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따질 때 결과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설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화 논증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수의 대표성 있는 예가 제시되었는가’, ‘통계가 제시된 경우 통계는 정확하며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일반화 논증 결론과 반대되는 사례는 없는가’이다. 또한 인과관계 논증을 할 때는 ‘상관관계가 꼼꼼히 검토되었는가’, ‘필요조건, 충분조건, 기여조건의 혼동은 없는가’, ‘간접원인과 직접원인을 구별하였는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수사학의 체계를 잡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을 설득력 강화의 필수 요소로 본 바 있다. 그는 설득의 3요소 중 하나로 ‘말 스스로 주장을 입증하는 논증 능력’¹⁶⁾인 로고스를 제시했다. 한편 현대에 들어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논증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수사학 연구가 이루어졌다.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는 주요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이성적인 논증 공간인 공론장(Public sphere)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면서 논증에 대해 ‘어떤 사안의 타당성 여부를 논거를 통해 뒷받침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대화 형태’라고 정의했다.¹⁷⁾ 이처럼 논증은 말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드는 힘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기술이다. 이것이 조정에서 논증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15) 이 단락의 내용은 Gula, R. J.(2009), 171-173쪽을 참조했다.

16) 강태완, 2010, 『설득의 원리』(남양주: 페가수스), 42쪽.

17) Borchers, T.(2007), 254-260쪽.